레미콘工場의 公害 排出施設 許可節次와 排出許用基準

朴 東 永
〈韓國레미콘工業協會 企劃課〉

Ⅰ. 머릿말

19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공업화의 촉진과 인구의 급증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公害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公害防止 내지 環境保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을 반영하기위해 1971년 公害防止法을 制定, 公布하고 1977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環境保全을 도모하기 위한 環境保全法을 制定, 公布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開發途上國家로서는 經濟成長의 높은 중요성을 過小評價할 수 없는 것이 現實的 問題이기 때문에 環境保全에 대한 規制가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主催하는「세계속의 韓國」으로 浮上한 현시점에서는 經濟成長과 併行하여 環境保全의 중요성이 인식돼야 할 것이다.

건강한 국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快適한 環境造成이 時急한 실정임을 勘案하여 政府에서는 88서울 五輪까지 大氣汚染許用基準을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강화한다는 발표가 2月末에 있었다. 또한 운행중인 차량을 對象으로 特別團束班을 편성, 연중 계속 규제한다는 발표도 아울러 있었다.

따라서 레미콘 業界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대처하고 있지만, 微力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環境保全法上의 規程, 즉 排出施設의 設置許可節次, 防止施設, 飛散粉塵, 排出許用基準 등을 레미콘施設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排出施設의 設置許可節次

1. 技術監理申請

표－1에 의한 技術監理 対象排出施設이면 排出施設의 設置許可를 받기 전에 環境技術 監理團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표－1에서 레미콘 시설은 大氣排出施設이 監理対象施設이므로 필수적으로 技術監理申請을 해야 하며, 騷音·廢水排出施設도 監理対象施設이면 申請한다.

事業者가 技術監理를 申請할 時는 技術監理申請書와 다음 사항에 따라 구비서류를 6部 작성하여 환경청, 大氣管理課에 제출한다.

가. 排出施設의 設置(変更)許可를 위한 技術監理申請

표 1. 환경기술 감리단의 기술 감리 대상 시설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2규정 개정 고시 (관보 84. 11. 22)

구 분	기 술 감 리 대 상 배 출 시 설
가. 공 통	1. 특별대책 지역내 전 배출 시설. 단, 소음은 "다"항에 준함. (특별 대책 지역 현재 없음) 2.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독물, 특정 독물 또는 극물을 제조(소분업은 제외)하는 전 배출 시설 3. 환경 보전법 제1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방지 시설 설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전 배출 시설. 4. 환경 보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 시설을 설계 시공하고자 할 때의 배출 시설. 단, 폐수 배출 시설은 "라"항과 소음은 "다"항에 준함. 5. 환경보전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6. 환경오염방지 기금을 융자 받아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의 해당 배출 시설
나. 대 기 배 출	1.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3종 이상 사업장의 전 배출 시설 단, 시간당 발열량 1,200만Kcal/HR 이하의 유류 전용 보일러 제외 2. 유연탄 사용 보일러, 레미콘 시설, 연탄 제조 시설 및 야적장 등 비산 분진 배출 시설 3. 특정 유해 물질 배출시설
다. 소음·진동 배 출 시 설	1. 신설 또는 변경하여 동력 합계 500HP 이상 공장의 소음·진동 배출시설 2. 신설 또는 변경하여 동종 시설 100대 이상의 공장의 소음·진동 배출 시설. 단, 공업용 재봉기는 제외
라. 폐 수 배 출 시 설	1. 1일평균 폐수 배출량 500m³이상의 폐수배출 시설. 단, 특정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은 폐수 배출량 50m³/일 이상.

排出施設의 設置許可을 받고자 하는 자는 排出施設 許可申請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 대기관리과에 제출.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와 용수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예측한 내역서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나. 防止施設 設置義務에 따른 免除申請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도

(2) 공정도

(3) 원료(연료와 용수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예측한 내역서

(4) 입증자료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공정,성능상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발생한다는 공인기관(국가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입증서류 또는 pilot등 연구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입증자료.

(5) 기타

제4항의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이와 동등한 자료로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

다. 自家防止施設의 設計·施工의 承認申請

環境保全法 第15條 第3項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事業者가 스스로 防止施設을 設計·施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自家防止施設의 設計·施工申

請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 대기관리과에 제출.

○구비서류

(1) 방지시설의 설계도

(2) 방지시설 설계치의 산출근거 및 처리효율

(3) 기술능력 보유현황

(4) 시설장비 보유현황

라. 共同防止施設의 設置承認申請

工業團地 기타 事業場이 密集된 地域의 事業者는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하기 위해서 共同防止 設置承認申請書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 대기관리과에 제출한다.

○구비서류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위치도 (축적 5만분의 1 지형도)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排水管渠 설치도면 및 내역서

(5)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2. 環境技術監理團의 業務內容

環境技術監理團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設置·変更에 따르는 技術檢討 및 효율적 運營을 技術指導하며, 이에 관한 事項을 審議한다. 환경청장은 다음의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 이를 監理團에 技術監理를 의뢰한다.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에 따른 기술 감리 신청서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에 따른 기술감리 신청서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승인에 따른 기술감리 신청서

○공동방지시설 설치승인에 따른 기술감리 신청서

監理團은 技術監理結果書에 적합성의 여부를 기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提示한다. 다만 防止效率의 適正을 위하여 工程 및 設置內訳書에 施設竣完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에 구체적 의견 및 방지대책을 기재한다.

○배출예상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예측의 적정성

○배출시설별 방지시설의 적합성

○방지효율의 적정성

○방지시설의 정상가동확인에 필요한 機器부착 여부

3. 排出施設의 設置許可申請

環境技術監理結果가 신청인에게 통보 되었을 때 적합판정이면 事業者는 市道의 환경과(환경위생과)에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申請書를 제출한다. 단 監理結果 통보 시에 竣完命令이 있으면 해당 시설을 竣完하여 제출한다. 表-2 의 排出施設 設置許可節次에서 처럼 監理結果가 신청인과 동시에 신청인의 관할 환경과(환경위생과)에 통보된다. 따라서 監理結果의 指示에 따른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申請書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20日 이내 許可證을 신청인에게 交付한다.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와 용수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3. 排出施設의 設置完了申請

事業者가 許可證을 交付받으면 기계 시설을 설치한다. 설치완료후 15일 이내에 排出施設 設置完了 申請書, 排出施設 檢査申請書, 排出

표 2. 배출시설 설치허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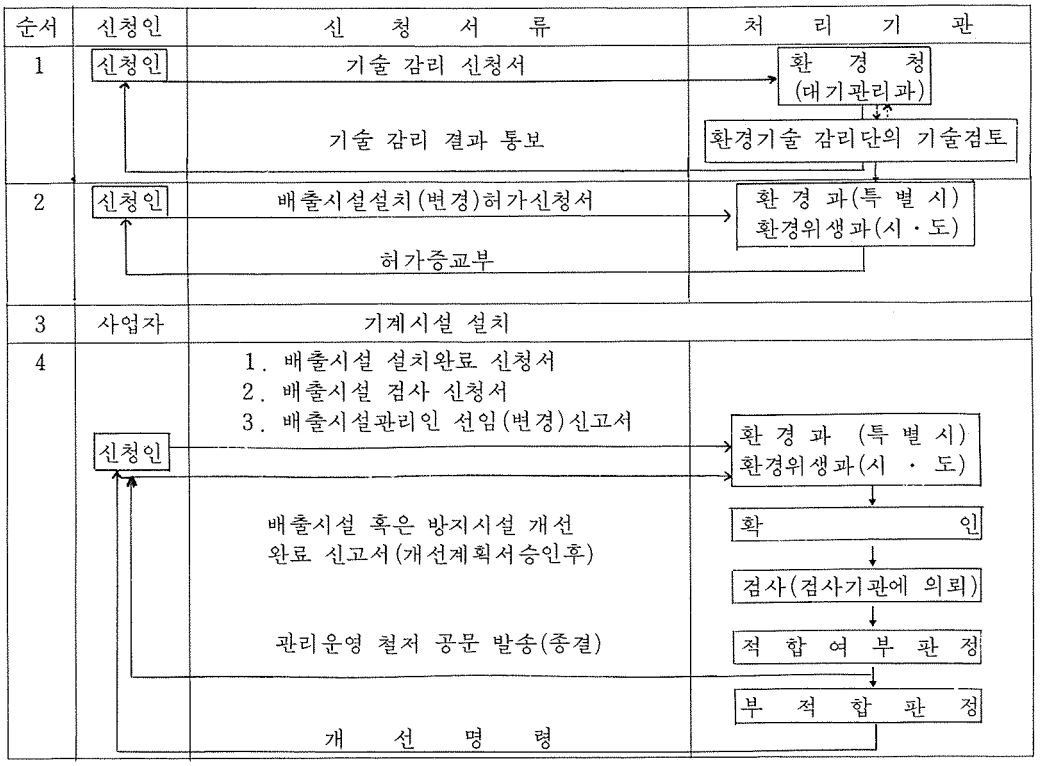

施設 管理人 選任 申請書를 동시에 관할 시 · 도의 환경과(환경위생과)에 제출한다.

表－2 순서 4의 處理過程을 細分化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確認

접수된 서류를 檢討하는 단계이다. 排出施設 管理人 選任(変更)申告書의 구비서류로는 환경기사자격증 원본(기재사항 기록후 반환) 또는 배출시설관리인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檢査

排出施設 設置完了申告를 받은 관할 환경과(환경위생과)는 5일 이내에 設置完了된 施設이 許可한 事項과의 符合與否를 調査한다. 調査 結果 設置完了된 시설이 許可事項과 符合될 때 시설에 따른 一定期間의 범위안에서 試驗稼動을 命한다.

排出施設의 檢査申請에 의해 檢査機關(국립환경연구소, 시 · 도의 보건소, 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檢査를 의뢰하여 試驗稼動期間내에 검사를 完了한다.

다. 適合與否判定

檢査機關의 檢査結果와 環境保全法上 해당지역의 排出許用基準이 符合되는지에 따라 判定이 난다. 適合判定이 確定되면 신청인에게 管理運營指針公文이 發送됨으로써 終結된다.

만약 檢査結果 否適格 判定 때는 신청인에게 改善命令이 시달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改善計劃書를 提出承認받아 改善후 排出施設 혹은 防止施設改善完了申告書를 提出하여 再檢査를 받는다.

檢査結果 適合判定을 받음으로써 비로서 操業

行爲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節次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許可節次에 앞서 면밀히 檢討되어야 할 事項은 他法令과의 저촉여부이다.

重要 他法令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3 조
○수도법 시행령 제 4 조 및 제 5 조
○공업배치법 제13조
○기타 국토이용관리법, 환경보전에 관련 되는 법령

Ⅲ. 排出施設

排出施設이라함은 大氣, 水質, 土壤을 汚染하거나 騷音, 振動, 惡臭등으로 國民의 健康과 生活環境에 被害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汚染物質등을 排出하는 施設物, 機械, 器具 기타 物体로서 레미콘 관련 施設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가스, 粒子狀物質 및 惡臭排出施設

(1) 시멘트저장시설로서 용량 100ton이상의 SILO
(2) 동력 30HP이상의 시멘트 또는 석회혼합 및 가공시설(MIXER)
(3) 동력 20HP이상의 분쇄시설(CRUSHER)
(4) 시간당 10만Kcal 이상의 열공급시설 (BOILER)

2. 騷音 및 振動排出施設

(1) 동력 10HP이상의 압축기
(2) 동력 10HP 이상의 송풍기
(3) 동력 20HP 이상의 변속기
(4) 동력 15HP 이상의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 포함)
(5) 동일장소에 혼합설치되어 동력합계가 35 HP 이상인 경우(BATCHER)

3. 廢水排出施設

(1) 시설합계가 용적 2 m^3이상의 혼합시설 (MIXER)
(2) 시설합계가 용적 2 m^3이상의 酸· 알칼리 처리시설(중화조)
(3) 시설합계가 용적 2 m^3이상 또는 동력 3 HP이상의 분리시설(침전조)
(4) 시설합계가 면적 20m^2이상의 세차장 시설 (세차장)
(5) 시설합계가 면적 20m^2이상의 정비시설(정비고)
(6) 독크시설길이 2 m이상의 윤활유교환 시설 (검차대)

Ⅳ. 防止施設 및 排出許用基準

防止施設이라함은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 또는 騷音·振動을 제거하거나 減小시키는 施設로서, 防止施設業의 登録을 한 者가 設計·施工하여야 한다. 다만 事業者 스스로 防止施設을 設計·施工하고자 할 때는 앞서 排出施設許可節次에서 언급한 대로 環境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環境保全法上의 防止施設은 아래와 같다.

1. 防止施設의 種類

(1) 大氣汚染 防止施設
① 중력집진시설
② 관성력 집진시설
③ 원심력 집진시설
④ 세정 집진시설
⑤ 여과 집진시설
⑥ 전기 집진시설
⑦ 음파 집진시설
⑧ 흡수에 의한 시설
⑨ 흡착에 의한 시설

⑩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

⑪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⑫ 상기 (1)~(11)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騷音, 振動 防止施設

① 소음기

② 방음덮개시설

③ 방음실 시설

④ 방음외피시설

④ 방음벽 시설

⑤ 방음터널시설

⑦ 흡음장치 및 시설

⑧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⑨ 방진구 시설

⑩ 배관진동 절연장치

⑪ 상기 (1)~(10)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3) 水質汚染 防止施設

① 物理的 處理施設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표 3.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 / 지역	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mg/ℓ)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ℓ)	부유물질량 (mg/ℓ)	노말헥산추출물질 함유량		페놀유 함유량 (mg/ℓ)	시안 함유량 (mg/ℓ)	크롬 함유량 (mg/ℓ)	아연 함유량 (mg/ℓ)	구리 함유량 (mg/ℓ)
					광유류 (mg/ℓ)	동식물유지류 (mg/ℓ)					
청정	5.8~8.6	50이하	50이하	50이하	1이하	5이하	1이하	0.2이하	0.5이하	1이하	0.5이하
가	5.8~8.6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5이하	30이하	5이하	1이하	2이하	5이하	3이하
나	5.8~8.6	150이하	100이하	150이하	5이하	30이하	5이하	1이하	2이하	5이하	3이하
다	5.8~8.6	200이하	250이하	200이하	5이하	30이하	5이하	1이하	2이하	5이하	3이하
특례	5.8~8.0	300이하	300이하	300이하	10이하	50이하	5이하	1이하	5이하	10이하	5이하

항목 / 지역	카드뮴 함유량 (mg/ℓ)	수은 함유량 (mg/ℓ)	유기인 함유량 (mg/ℓ)	비소 함유량 (mg/ℓ)	납 함유량 (mg/ℓ)	6가크롬 함유량 (mg/ℓ)	용해성망간 함유량 (mg/ℓ)	불소 함유량 (mg/ℓ)	PCB 함유량 (mg/ℓ)	대장균군수 (개/mℓ)	색도 (도)	온도 (℃)
청정	0.02이하	불검출	0.2이하	0.1이하	0.2이하	0.1이하	2이하	3이하	불검출	100이하	200이하	40이하
가	0.1이하	0.005이하	1이하	0.5이하	1이하	0.5이하	10이하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300이하	40이하
나	0.1이하	0.005이하	1이하	0.5이하	1이하	0.5이하	10이하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400이하	40이하
다	0.1이하	0.005이하	1이하	0.5이하	1이하	0.5이하	10이하	15이하	0,003이하	3,000이하	500이하	40이하
특례	0.2이하	0.01이하	2이하	1이하	2이하	0.5이하	20이하	30이하	0,003이하	—	600이하	45이하

(주) 1. 배출허용기준항목중 배출시설별로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거나 항상 기준이내로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항목 또는 항목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목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섬유제조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건조시설
㈒ 증류시설
② 化學的 處理施設
㈎ 화학적 침강시설
㈏ 중화시설
㈐ 흡착시설
㈑ 살균시설
㈒ 이온교환시설
㈓ 소각시설
③ 生物學的 處理施設
④ 기타 環境廳長이 인정하는 處理施設

2. 排出許用基準

排出施設에서 발생하는 汚染物質과 惡臭發生物 및 機械器具 등에서 발생하는 騷音·振動에 대해서는 地域別, 時間別, 施設別에 따른 排出許用基準이 保健社会部令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는 粉塵, 飛散粉塵, 廢水, 騷音에 대한 전반적인 基準을 알아보면서 레미콘 제조시설 관련 項目을 살펴본다.

1. 粉塵의 排出許用基準

粉塵이라함은 大氣중에 浮遊하거나 飛散 降下하는 微細한 固体狀의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粉塵에는 排出口粉塵과 일정한 排出口가 없는 飛散粉塵이 있다.

레미콘 제조시설 경우에 排出口許用基準은 400mg/Sm³이하이며, 飛散粉塵은 2 mg/Sm³ 이하이다.

레미콘 제조시설의 주된 汚染物質은 粉塵이다. 특히 일정한 排出口가 없는 飛散粉塵은 구체적인 防止対策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效率性이 희박하다. 따라서 飛散粉塵 發生要因 및 除去方對策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1) 飛散粉塵 發生原因
① 차량운행
② 불도자 적치시 비산
② 콘베어 수송시 비산
④ 골재 낙차에 의한 비산
⑤ 시멘트 혼합낙차에 의한 비산
⑥ 골재하화
⑦ 풍력비산

(2) 除去対策
① 차량운행 : 세륜시설(출입시). 부지내 차량도로 포장
② 하화 및 stock pile의 飛散粉塵除去類型
○지붕설치형은 다량의 골재를 저장할수 있으며, 風力飛散을 防止할 수 있다. 단점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불도자 積置시 일부 飛散우려가 있다. 또한 대형구조물설치로 費用이 많이 든다.
○골재 싸이로형은 野積시 飛散防止가 可能하며 골재저장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골재의 저장량이 적으며 싸이로 수명이 짧다. 또한 비교적 設置費가 많이 소요된다.
○open stock pile (살수형)은設置費가 적게 들지만 하화積置, 野積등에서 飛散粉塵의 發生우려가 크다. 都市外地域에서 많이 設置한다.
③ 호파수송(콘베어수송)
○벨트콘베어(밀폐형)는 구조가 간단하면서 飛散粉塵의 防止效果가 있어 주로 많이 쓴다.
○파이프 콘베어는 완전밀폐형으로 飛散粉塵의 防止效果가 큰 반면 設置費가 過多하다.
○벨트 콘베어(개방형)는 구조가 간단하지만 運營시에 粉塵의 飛散우려가 크다.

2. 廢水의 排出許用基準

廢水라 함은 물에 液体性 또는 固体性의 廢棄物이 混入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레미콘 施設에서도 수소이온농도(PH),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노말

혁산 추출물질 함유량(광유류 및 동식물유지류) 이 주된 점검 항목이다. 表－3에서 지역별 분류의 특례지역은 현재까지는 없다. 보통 "가" 와 "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自動車 排出가스 許用基準

自動車 및 重機(덤프트럭, 레미콘트럭포함)로 부터 大氣중에 排出되는 가스·媒煙등의 排出許用基準은 표－4와 같다.

표 4.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항 목	차 종	허용기준	측정방법
일 산화탄소	휘발유 또는 엘피지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2륜차는 제외하고, 중기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한한다)	4.5% 이 하	정지가동시의 측정
탄화수소	휘발유 또는 엘피지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2싸이클, 2륜 및 특수기관 자동차는 제외하고, 중기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한한다)	1,200 ppm 이하	정지가동시의 측정
매 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2륜차는 제외하고, 중기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한한다)	50%이하	무부하급가속시의 측정

環境廳은 1987年 1月1日부터 自動車製作에 있어서의 排出濃度許用氣準을 美國, 日本등 先進國水準으로 강화하는 한편 運行중인 自動車는 1985年 3月부터 特別團束班을 編成, 연중계속 규제한다는 발표가 3月 5日에 있었다.

4. 騷音 排出許用基準

騷音이란 機械, 器具등에서 발생하는 强한 音을 말한다. 騷音 排出許用基準은 対像騷音度에서 表－5에 의한 補正評價騷音度가 50dB 以下이다. (dB (데시벨) : 음향강도단위)

레미콘 시설의 騷音發生防止를 필요로 하는 部分을 요약하면,

(1) 機械騷音 : 벨트콘베어, 콤프레샤

표 5. 소음배출 허용기준

대상소음도에서 다음표에 의하여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dB(A)이하일 것.

보 정 표		
항목	내 용	보정표
충격음	충격음성분이 있을 경우	+5
관련시간대에 대한 측정 소음 발생시간의 백분율	50%이상	0
	25%이상 50%미만	−5
	12.5%이상 25%미만	−10
	12.5%미만	−15
시간별	(낮) 06 : 00～18 : 00	0
	(저녁) 18 : 00～24 : 00	+5
	(밤) 24 : 00～익일06 : 00	+10
지역별	1. 도시지역	
	○주거전용지역, 녹지지역,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15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20
	2.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역	0
	3. 취락지역중 주거지구 이외의지구, 수산자원보전지역, 경지지역 개발촉진지역, 유보지역	−10
	4. 공업지역	−20

(주)
1. 관련시간대에서 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으로 한다.
2. 지역별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표 6. 公害 배출허용기준

區分			許用基準	測定基準
분진	배출구분진		400mg/ℓ이하	배출구측정시
	비산분진		2mg/ℓ이하	부지경계측정시
폐수	PH	가	5.8~8.6mg/ℓ	처리장 방류구 측정시
		나	5.8~8.6mg/ℓ	
	SS	가	100mg/ℓ이하	
		나	150mg/ℓ이하	
	COD	가	100mg/ℓ이하	
		나	150mg/ℓ이하	
	노말헥산 추출물질 함유량	광유류	5mg/ℓ이하	
		동식물유지류	30mg/ℓ이하	
가스	일산화탄소		4.5%이하	정지 가동시 측정
	탄화수소		1,200ppm이하	정지 가동시 측정
	매연		50%이하	무부하 급가속시 측정
소음			50dB(A)이하	부지경계 측정시

(2) 골재의 落下騷音 : 슈트 및 골재빈의 騷音發生, 計量室의 騷音

(3) 믹서의 混合騷音 : 믹서실의 騷音發生

(4) 트럭 重裝備의 배기음 : 레미콘 트럭, 덤프트럭, 불도저의 運行시 騷音發生.

레미콘 製造施設의 騷音防止는 粉塵 및 發生의 防止보다 더 광범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重裝備의 배기음의 防止를 위해선 주행시 速度의 規制, 그리고 경적 사용, 드럼의 加速回轉, 過負荷 運轉을 금지함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粉塵, 廢水, 自動車 排出가스, 騷音에 대한 全般的인 排出許用基準을 각각 살펴보았다. 레미콘 製造施設의 重要項目에 대한 일괄적인 許用基準을 表-6으로 要約한다.

V. 맺는말

時代의 흐름, 즉 86, 88년의 중요 行事를 開催하게 됨으로써 우리 주변에는 많은 変化가 일고 있다. 레미콘 業界도 이러한 変化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은 工場의 新·增設로 表面化 되었다.

우리 레미콘 業界가 注視하여야 할 또 다른 変化는 漢江開發과 都市의 再開發事業등에서 알 수 있듯이 快適한 生活環境造成을 위하여 關係當局에서 레미콘 施設을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注目하고 있다는 점을 勘案, 都市型産業으로써 役割을 遂行해야 할 것이다. *